

council.chungnam.go.kr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

2024

03

의정 정보



충청남도의회
입법 정책담당관

목차

I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3
	•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4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6
	•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13

II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7
	•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21
	•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23
	•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6

III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29
	• 경남도의회, 지역 대학생 직접 챙긴다.	31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의회가 주도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 기초학력 진단검사’ 전국 최초 시행…올해 확대”	33
	• 인천시의회,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관광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	35
	• 충북도의회, “도의회 이해에 도움” 청소년 의회교실 ‘인기 만점’	37

IV	최근 제·개정 법령	39
	• 가축전염병 예방법	4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4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1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55
	•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8조제3항 등 관련	57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62
	•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66



I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시행 2024. 3. 8.]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261호, 2024. 3. 8., 제정]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지급 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2. 19.] [경상북도조례 제4999호, 2024. 2. 19., 제정]

이 조례는 경상북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제9조(포상) 도지사는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06호, 2024. 2. 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인 신흥사랑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흥사랑주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치원을 신흥리 11-1번지 일원에 건설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시장과 공공주택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흥사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계약자 및 계약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신흥사랑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예비입주자”란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하여 입주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택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거나 공실이 없어 입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대기자를 말한다.

6. “임차인대표회의”란 신흥사랑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7. “관리규약”이란 신흥사랑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제3조(최초입주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함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예비입주자를 공급세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예비입주자의 수가 공급세대수의 20퍼센트 미만이거나 2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고,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명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등) ① 신흥사랑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우선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급규칙 제52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 모집하면서 제출받은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을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는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체 호실에 대한 계약 및 입주가 완료된 이후 퇴거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호실 배정) 신흥사랑주택의 면적별 호실의 배정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임대차계약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흥사랑주택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등) ① 신흥사랑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거절 등)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흥사랑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입주자가 신흥사랑주택 외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신흥사랑주택을 전대(轉貸)한 경우<개정,

2024. 2. 26.)

4.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6.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요양이 필요하고, 잦은 반사회적 질서위반 행위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단지 내 공동체 생활영위가 극히 곤란한 경우<개정, 2024. 2. 26.>
7. 입주자의 사망, 행방불명,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등으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8. 신흥사랑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신흥사랑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다만, 즉시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11. 입주자의 자산 또는 소득이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2.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1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신흥사랑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② 임대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등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보관하되, 퇴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일에 인출하여 입주자에게 반환한다.
- ③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

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리비 등) ① 시장은 신흥사랑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시설 점검, 보수 및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관리비 내역, 납부액, 입금 계좌를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입주자 중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반관리비(세대별 직접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 성격의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안전관리비용,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관리비 등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지원액은 시에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별

일반관리비 부과금액 및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일반관리비를 지원받는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일반관리비의 금액이 세대별 월 임대료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고 있는지 또는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정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성명
2.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입주자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된 사실이 통보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입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입주자 관리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5조제2항의 방법으로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입주자가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납부대장 등을 작성·기록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련 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시장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퇴거 등 조치) ① 시장은 입주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일 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퇴거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제10조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제10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임대운영 및 시설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신흥사랑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신흥사랑주택(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및 제76조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모집·선정·관리 및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입주자 관리 사무
2. 건축물 전체(전기, 소방, 승강기 및 통신 등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다)의 유지, 보수, 안전점검 및 관리 사무
3. 주차장 등 공용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
4. 임대료 및 관리비의 산정·부과·징수 사무(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사무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신흥사랑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한 사무

제20조(사회복지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신흥사랑주택 안에 함께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입주자 등의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의 고령자 친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신흥사랑주택 입주자와 신흥사랑주택이 소재한 행정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신흥사랑주택이 위치한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대하여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 및 이용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흥사랑주택이 위치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의 공동사용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주택의 유지보수) ① 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파손·하자 발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 등의 고의에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주택 내부 도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내부 도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 〈삭제, 2024. 2. 26.〉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87호, 2024. 3. 7., 일부개정]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7.〉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4. 3. 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5·27, 2007· 5·10, 2024. 3. 7.〉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도시가스요금
4. 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및 택시요금)
5.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6. 주차요금
7.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5·27〉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1998· 9·26, 2006·10·12, 2008· 6·30, 2010·12·31, 2014·12·3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와 교수·언론인·관련 전문가·울산광역시의회 의원·소비자단체 대표·근로자 대표 등의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8· 5·27, 2024. 3. 7.>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자격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2. 12. 1., 2024. 3. 7.>

② 제6조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대신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 5·27]<개정 2022. 12. 1., 2024. 3. 7.>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27, 2024. 3. 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서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물가대책사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1· 9·29>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26, 2008· 6·30, 2014·12·31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3. 7.>

④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물가대책사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1998· 9·26, 2001· 9·29>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제4 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5·10]<개정 2024. 3. 7.>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안건과 불가피한 사유로 시

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실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5·27>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7.>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II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시행 2024. 3. 12.]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90호, 2024. 3. 12., 제정]

이 조례는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권익 보호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홍보
2.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



자 현황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1. 2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73호, 2024. 3. 8., 제정]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배설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퇴치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 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시행 2024. 2. 23.]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조례 제2357호, 2024. 2. 2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후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2., 2024. 2. 23.>

1.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하여 1계좌 1,004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후원자”란 천사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천사지킴이”란 천사운동의 홍보활동 등을 위해 운영하는 조직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시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 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5.>

② 시장은 천사운동 운영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

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2. 22.>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담당과장이, 서기는 천사운동 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천사운동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2., 2013. 7. 12.>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천사운동 운영(천사지킴이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1. 2., 2022. 4. 8.>

제8조(시유재산 사용) ① 시장은 천사운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4. 2. 23.>

제9조(천사운동의 날 등) ① 시장은 천사운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천사운동의 날로 정하며, 천사운동의 날로부터

1주일을 천사운동 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2. 23.]

② 시장은 천사운동의 날 및 천사운동 주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제9조의2(포상) 시장은 천사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2.]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65호, 2024. 3. 12., 제정]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이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과 어린이 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

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이용 예약자가 해당 이용시간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

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이용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III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경남도의회, 지역 대학생 직접 챙긴다.

- 김진부 의장-도내 6개 대학 총장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
-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 및 성실이행 약속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청년 취업난과 역외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들을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내 소재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2024년 여름방학 시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내 4년제 대학 중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설치된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 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이하 “협약 대학교”)(※ 교명 가나다 순)

이날, 협약식은 김진부 도의회 의장과 홍정효 경남대학교 대외부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부구옥 영산대학교 총장, 이대희 인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서에는 대학생에게 의회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별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도의회와 협약 대학교가 협력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서 김진부 의장은 “도의회와 지역 대학은 경남의 미래인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이번 협약식이 도의회와 6개 대학간 교류·협력의 소중한 밑알이 되어,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4월 의원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와 5월 의회·대학의 인턴 선발을 거쳐, 6월 24일~7월 31일까지 6주 동안 '제1기(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 대학 간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주제를 고려한 협약 대학의 추천 학생 중에서 인턴을 선발하여 방학기간에 6주 정도 의회에서 의원과 소통·협업 과정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대학생 인턴십은 경남도의회가 실습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인턴기간 동안 의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점을 부여한다.

김현기 의장 “의회가 주도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 기초학력 진단검사’ 전국 최초 시행 . . . 올해 확대”

- '22년 제11대 의회 출범과 함께 서울교육 혁신 의지 표명...1년 반 만에 결실 맺어
- 서울특별시의회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22.8.5~'23.8.4)해 조례, 예산 등 마련
- 의회 주도 30억 원 증액 편성...평가 도구 개발, '23년 11월 210교 4만5천 명 대상 첫 실시
- 올해 15억 예산 승인, 300교로 진단검사 확대, 교육청과 협력해 시민이 바라는 교육 지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 기초학력(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

- 고2·중3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 '19년 3.6% → '20년 8.6%
-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19년 9% → '20년 13.5%(7명 중 1명 수포자)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간(’22.8.5~’23.8.4) 기존 정책 점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을 의회 주도로 30억을 증액 편성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23.7.1)을 통해 기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기초학력 지원 부서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교, 약 4만5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 표집학교 138교, 희망학교 72교로, 초등학교 107교, 중학교 58교, 고등학교 45교다.
- 진단검사 결과는 1월 학교와 학생에게만 제공됐다.

2월 20일(화)에는 의회에서 서울 학생 기초학력(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보고회가 열렸다. ▲진단검사 개별결과 및 의의 ▲실시결과 ▲서울 학생 문해력 성향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진단검사 만족도 조사 결과, ‘자녀의 기초소양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을 잘 진단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학부모 74%(매우 그러함, 그러함), 교원 76%(매우 그러함, 그러함)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교육에 있어서 이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었고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진단검사라는 미래역량을 진단하는 검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인천 관광 홍보 전략 모색

인천시의회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관광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관광의 새로운 방향성과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형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김용희)’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김용희(국·연수2)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국·미추홀3) 의장, 조현영(국·연수4)·김대영(민·비례) 의원, 인천재능대학교 박선미(디지털마케팅학과) 외래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관광 홍보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의 관광 네트워크 현황 분석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적 가치 증진 전략 ▶통합된 관광 정보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참석자들은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며, 인천 관광의 미래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유튜브를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홍보 전략’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박선미 교수는 “디지털마케팅과 소셜미디어 활용은 현대 관광 홍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며 “인천만의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희(국·연수2) 대표의원은 “인천은 그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천 관광의 새로운 방향성과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의회 이해에 도움” 청소년 의회교실 ‘인기 만점’

지난해 참가학생 89.4% ‘만족’... 민주시민 역량 제고 역할 ‘톡톡’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운영 중인 청소년 의회교실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총 98회, 172개 학교가 참여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2년 11회, 2023년 13회를 운영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충북도의회의 슬로건에도 부합하고 학생들의 의회 민주주의 교육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39명의 89.4%(303명)가 ‘매우 만족(60.8%)’, ‘만족(28.6%)’한다고 답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이 도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4%(217명)가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 28.9%(98명)는 ‘조금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은 ‘직접 도의원이 되어 선거를 진행하고, 회의를 하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지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히지 않을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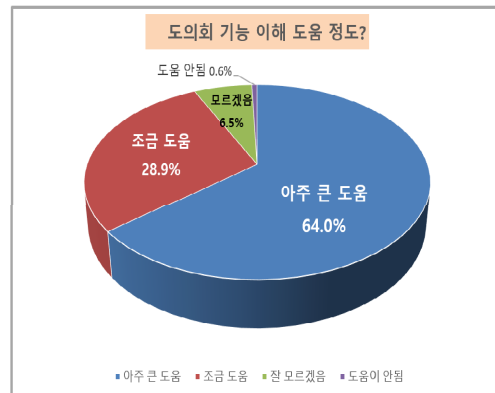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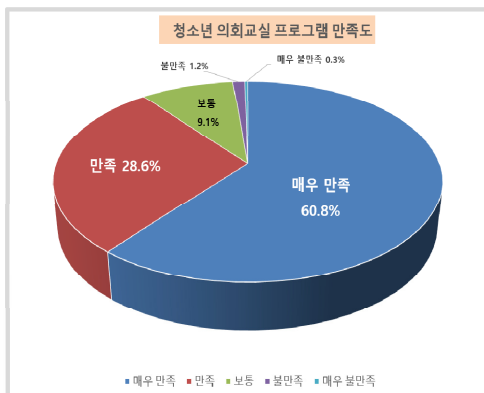
도의회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의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연 10회 운영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알차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별첨] 청소년 의회교실 2023년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IV

최근 제 · 개정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가축 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 정 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견과"를 "발견,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신발·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을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소독설비 및"을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독설비를"을 각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소독설비·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계안정 지원")을 "(생계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생계안정 비용"을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부터 제5호의10까지를 각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11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 정 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1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을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중 "연구"를 "홍보·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를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 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951호, 2023. 12. 12.,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를 유예 받은 자가 해당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 정 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9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7조제1항제2호 중 "인하여 피해를 입은"을 "인한 인명 피해액 및"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을 "법 제21조제1항제2호

라목"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1억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중에"를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실태 정밀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종 조사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별표 2 제2호에 나목 및 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호	20	40	60
우				



호.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150	200	300 (4차 이상 위반 시 500)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보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수렵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8호, 2024. 3. 12.,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29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통 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 정 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대통령령 제3430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8조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 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한지?

[의견24-0072, 2024. 3. 8., 대구광역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대구시위원회조례”라 한다)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및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하며(제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제3조제2항), 같은 조례 제5조제4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이하 “대구시지원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구시지원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둔 대구시위원회조례 제5조제4항 본문의 내용과 상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하나의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

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례 상호간 또는 조례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9. 26. 의견제시 14-0194 참조).

살피건대, 대구시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과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대구시위원회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3. 9. 의견제시 12-0068; 법제처 2023. 5. 16. 의견제시 23-0155 등 참조).

따라서, 대구시위원회조례에서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위촉위원이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대구시지원조례에서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대구시지원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구시지원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구시지원조례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현행 규정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각주: 법제처 2010. 1. 22. 해석 09-0387;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쪽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대구시위원회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개별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개별 조례에서 정하

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위원회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조제2항), 대구시지원조례 제8조제3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면 대구시지원조례에서 위원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구시위원회조례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지원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려는 취지라면, 각 조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간의 상충을 피하고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전문가 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등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질의요지

-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 나. 통장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통장을 재공고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의견24-0071, 2024. 3.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통장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통장을 재공고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로구규칙”이란 한다) 제3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은 통장으로 임명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두 차례 더 연속해서 임명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통장이 다시 계속하여 ‘같은 통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3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5. 12. 7. 해석 15-0798; 법제처 2019. 5. 29. 해석 19-0183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를 합산하여 종로구규칙에서 정하는 총 6년의 임기동안 연임 제한 횟수를 모두 채운 경우로서,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선정·임명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통장의 직위에 연속하여 세 차례 임명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임 가능한 최대 횟수를 채운 통장을 연속하여 다시 임용하는 것은 종로구규칙 제3조에서 두 차례만 통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7. 15. 의견제시 11-0138; 법제처 2012. 5. 22. 의견제시 12-0165 참조).

따라서,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로구규칙 제3조에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는 통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는 두 번만 더 임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는 통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더 연속하여 임명되었다면 그 다음은 일정 기간 임명이 금지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임명이 금지되는 '일정 기간'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종로구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규칙 제3조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통장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같은 직위에 임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11. 21. 의견제시 12-0384 참조).

그런데,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 기간이 얼마인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1회 취임 시의 임기, 연임을 마친 뒤 후임자가 취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최초 통장 공개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어 두 번째 공개모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임(前任) 통장 다음의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통장 임명 과정에서 공개모집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통장을 재공고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호의 주민 중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③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제5조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에서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통행로 4개소 이상의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제3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4-0043, 2024. 2.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제1호), 과세 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제2호), 이의신청 관련 사항(제3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4호), 감치에 관한 사항(제5호), 시가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제6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제7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제8호)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부평구조례”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제1항),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제1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제2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제3호),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제4호) 및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는바, 그 설치·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부평구지방세위원회”라 한다)가 부평구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평구지방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심의·의결 대상이 일의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호인 제9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지방세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⑨ (생략)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sund.chungnam.go.kr



공감하는 소통의장
변화하는 선진의장
실천하는 책임의장

2024
03

의정
정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This image shows a blank memo template. At the top center, the word "MEMO" is written in a large, bold, sans-serif font. Below the title, the page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corners of the page are decorated with colorful geometric shapes: orange and red in the top-left, blue and green in the bottom-left, and red and green in the bottom-right.

의 정 정 보

- ❖ 발 행 월 : 2024년 3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